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
	배포일시	2022. 5. 12.(목) / 총 3매(본문2, 참고1)
담당 부서 생활교통복지과	담 당 자	• 과장 최정민, 사무관 박영주, 주무관 안정수 • ☎ (044) 201-3812, 3807
보 도 일 시	2022년 5월 13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5. 12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데이터센터 교통유발부담금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
-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」 입법예고(5.13~6.23) -

□ 국토교통부는 데이터센터*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** 산정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**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(안)**을 5월 13일부터 6월 23일까지 **입법예고** 한다고 밝혔다.

*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컴퓨터 시스템·통신장비·저장장치(스토리지) 등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·관리하는 민간 및 공공의 시설물

** 도시 내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사회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여 도시교통개선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
(교통유발부담금) = (바닥면적 합계) × (단위부담금) × (교통유발계수)

□ **데이터센터**는 빅데이터의 저장·유통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2000년대 이후 지속 설치*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그간에는 **별도 교통유발계수 규정 없이** 지자체별로 업무시설·방송통신시설 등 유사 용도의 계수를 적용**하여 부담금을 부과하여왔다.

* '15년 142개→'17년 153개 →'19년 158개 (데이터센터 연합회)

** 시행규칙 상에서 구분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성질이 유사한 용도의 계수 적용 (도시규모 50~100만 기준, 업무시설 1.00 방송통신시설 中 전신전화국 0.82 등)

○ 특히, 데이터센터는 통신장비 등 소요 시설물 면적은 큰 반면 단위면적 대비 교통유발량이 유사 시설에 비해 적어*, 실제 교통유발 정도보다 **과도한 액수의 부담금이 부과**되고 있다는 지적도 지속 제기되어왔다.

*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유지보수인력 외 상주인력 및 방문객이 적음

□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전년도에 **한국교통연구원**에서 실시한 교통유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센터의 특성을 반영한 교통유발계수를 도출, 금번 개정시 **별도 항목으로 신설**하게 되었다.

《 주요 시설 교통유발계수 》

대분류	세분류	도시규모(단위 : 명)			
		100만 이상	50~100만	30~50만	10~30만
업무시설	공공 및 일만	1.20	1.00	0.82	0.82
방송통신시설	방송국, 촬영소	1.89	1.20	1.18	1.00
	전신전화국	1.00	0.82	0.67	0.67
	데이터센터	0.82	0.68	0.62	0.62

* 이전에는 데이터센터에 대해 주로 업무시설, 전신전화국 등으로 계수를 적용

○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,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**7월경**에 **공포·시행** 예정이다. 이에 따라 올해 지자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분부터는 신설된 계수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.

*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은 2021.8.1.일~2022.7.31.일 기준하여 10월 납부 예정

□ 국토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“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데이터센터에 대한 **합리적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**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” 면서,

○ “이번 개정이 **빅데이터 활용 확대의 핵심 인프라**인 **데이터센터**에 대한 **기업투자**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” 라고 말했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박영주 사무관(☎ 044-201-381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 고 **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요**

□ 부과 목적

○ **교통유발 시설물의 소유자**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**교통량 감축을 유도**하고 **도시교통개선 투자재원 확보**

* 교통유발부담금은 **전년 8.1일~금년 7.31일** 분을 **금년 10월에 부과·징수**

□ 부과 방법

○ (**부과대상**) **도시교통정비지역**(인구 10만 이상 도시) 내 각 층 **바닥면적**을 합한 면적이 **1,000㎡ 이상인 시설물**의 소유자

- 시설물의 위치·규모·특성 등 고려하여 **조례로 50% 범위에서 조정** 가능

○ (**산정기준**) 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 합(㎡) × 단위부담금 × 교통유발계수

- (**단위부담금**) 면적구간에 따라 **350원~1,000원/㎡**

바닥면적의 합	3천m^2 이하	3천m^2초과 3만m^2이하	3만m^2 초과
단위부담금(원/m^2)	350	700	1,000

- (**교통유발계수**) 시설물의 용도와 도시규모에 따라 차등(0.20~5.46)

* 단, 시설물의 위치·규모·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**조례로 100% 상향 또는 50% 하향 조정** 가능

< 주요 시설 교통유발계수 예시 (시행규칙 별표4) >

대분류	세분류	도시규모			
		100만이상	50만이상 ~100만미만	30만이상 ~50만미만	10만이상 ~30만미만
근린생활시설	소매점	1.68	1.66	1.64	1.12
	일반음식점	2.56	2.48	1.59	1.48
업무시설	공공 및 일반	1.20	1.00	0.82	0.82
판매시설	도매시장	1.81	1.77	1.63	0.94
	백화점, 할인점 등	5.46	4.48	2.67	2.67
	그 밖의 소매시장	1.68	1.66	1.64	1.12
방송통신시설	방송국, 촬영소	1.89	1.20	1.18	1.00
	전신전화국	1.00	0.82	0.67	0.67